

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

제안 설명

이병윤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건의안은 최근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질적인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, 현행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상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임대인의 조세 부담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전용 60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